

나) 품위유지의 의무(제63조):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■ 인사혁신처 징계업무편람

【사례】 “품위”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,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것이 손상되기 위해서는 공개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임.

※ 품위손상 유형(예시): 도박, 강·절도, 사기, 폭행, 성폭행, 성희롱, 음주운전, 미약류 소지 및 투약 등

다) 정치운동의 금지(제65조):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.

라) 집단행위의 금지(제66조):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.

마)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(제64조):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### 라. 근무형태

#### 1) 일반적 관리

가) 공휴일 근무: 사무처리 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

#### 나) 출장

(1) 출장이라 함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

(2) 출장명령은 해당 교원의 업무관련성, 출장내용, 출장목적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임(※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됨)

다)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(2002년 3월 1학기부터 시행)

(1) 적용대상: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

(2) 『국가공무원복무규정』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(8시간)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,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·퇴근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#### 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근무시간

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(근무시간의 변경)에 따라 총무처와 협의를 거쳐 1985.2.6.(문교부 교행 01136-104-F)일자로 업무특성상 09:00~17:00(동절기, 하절기 공통)로 시행

※ 교원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는데 이는 급식지도 및 학생 지도를 하기 때문임

(3)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(단, 영양교사의 경우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가능)

◦ 특정 학년별·교과별 교사집단이 단위학교 근무시간과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없음